

# 심 사 보 고 서

【서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】

1996. 12. 23.

산업. 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1996. 11. 21
- 나. 제출자 : 서 산 시 장
- 다. 회부일자 : 1996. 12. 20
- 라. 상정일자 : 1996. 12. 23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과장 윤병규)

### 가. 제안이유

'95. 12. 6 「풍수해대책법」이 「자연재해대책법」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 
현행 「서산시수방단운영조례」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수방단의 임무, 수방단원의 위촉, 수방단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2조 내지 제4조).
- 수방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부 및 경계반, 복구반, 구호반으로  
편성함(안제5조).
- 소집해제 및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기타 수방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)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본 조례는 '95. 12. 6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되게 됨에 따라 현행 서산시수방단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### 5. 토 론

- 생략

### 6. 소수의견

- 없음

### 7. 심사결과

- 원안대로 가결

# 서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1996. 11. 21

제 출 자 서 산 시 장

의안 번호	118
----------	-----

## 1. 제안이유

가. '95.12.6 「풍수해대책법」이 「자연재해대책법」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현행 「서산시수방단운영조례」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수방단의 임무, 수방단원의 위촉, 수방단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2조내지제4조).
- 나. 수방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부 및 경계반, 복구반, 구호반으로 편성함 (안 제5조)
- 다. 소집해제 및 기록 보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).
- 라. 기타 수방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(안 제7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(수방단의 설치 운영) 및 동법시행령 제15조(수방단의 세부운영 사항)

## 서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

서산시수방단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산시수방단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산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·정비
2.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
3. 법 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
4. 법 제23조제3항과 영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참여
5.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
2.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
3. 기타 시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제1항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.

1.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
2. 고교생 및 대학생
3. 경찰관 및 군인
4.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

제4조(단장) ① 단장은 단원중에서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.

②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.

제5조(편성)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본부 및 경계반 : 10명 이내

가. 주민대피 유도

나.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·유지

다.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

라.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

마.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

2. 복구반 : 30명 이내

가.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·정비

나.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

다.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

라. 재해지구의 정리·정돈

3. 구호반 : 10명 이내

가.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

나. 사망자·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

다.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

라.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

제6조(소집해제 및 기록보존)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

보존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타 필요한 사항)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 구성된 수방단은 이 조례에 의거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# 서산시수방단 편성 및 소집현황

편 성 현 황			소 집 상 황							비 고			
일련 번호	직 책	성 명	주민등록번호	일시( )			일시( )				일시( )		
			주 소	소 사	집 유	시 간	소 사	집 유	시 간		소 사	집 유	시 간